

서울특별시의회
제315회 정례회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385호)

제안설명



2022. 12. 20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춘곤

(국민의힘 강서구 제4선거구,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)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춘곤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 주최·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.

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, 옥외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·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첫째, 옥외행사의 정의 및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둘째,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옥외행사에서 시민 안전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.

셋째, 안전관리계획에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.

넷째,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